

# [’26년 신규] 육아기 10시 출근제 주요내용

## □ 도입배경

-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법정제도와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주 지원제도 도입

## □ 지원대상

- 1일 1시간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(우선 지원대상기업), 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지원

## □ 지원내용

- **(금액)** 근로자당 월 30만원
- **(기간)**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(3개월 단위 지급)  
\* 기준 워라밸일자리장려금(소정근로시간단축) +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 합산하여 최대 1년
- **(규모)** 총 근로자 수의 30% 한도(최대 30명)

## □ 지원요건

- ① 근로자에게 육아 사유로 단축근무 허용(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)
- ② 기준 임금 유지
- ③ 하루 1시간 근무시간 단축(주 35~40시간 → 30시간(초과)~35시간)
- ④ 취업규칙·인사규정 등에 규정, 근로자 근태 관리(전자·기계적 방식 등)
- ⑤ 최소 1개월 이상 활용

## □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

- 육아기 10시 출근 제도 도입·활용(1월 이상) →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  
(고용24 홈페이지: [www.work24.go.kr](http://www.work24.go.kr)) → 지원금 지급(고용센터)

## □ 시행시점

- 2026년 1월 1일

# 육아기 10시 출근제 관련 FAQ

## 1.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도를 도입·허용해야 하는지?

- 사업주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.
-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일·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고, 장시간 노동 개선을 위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## 2.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?

- (근로자) 사업주에게 제도를 설명하여 자율적으로 도입을 결정하면, 근무시간·활용기간 등에 대해 합의 후 사용 가능합니다.
  -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, 1350번 전화 또는 고용센터로 문의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- (사업주) 취업규칙·인사규정 등에 단축제도를 도입하고,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활용하면, 고용24(온라인, work24.go.kr)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\* 하루 1시간 단축(출·퇴근), 취업규칙·인사규정 등에 단축제도 도입, 근로계약서 변경, 근태 기록 관리, 기준 임금 유지 등 필요

## 3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중복 사용 가능한지?
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(법정 의무제도)과 육아기 10시 출근제(사업장 자율제도)는 별개의 제도이나,
    -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원금만 지원 가능합니다.
- \* (예시)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(~'25년) + 10시 출근제 1년('26년~)
- \*\*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·고용보험법에 따라 기업 지원금과 근로자 급여가 지급됨

## 4. 자녀가 2명이면 2년까지 사용 가능한건지?

- 제도 이용 근로자의 자녀수와 상관없이 근로자 1명당 기업에 최대 1년까지만 지원합니다.
  -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와 별개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- 다만,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(소정근로시간단축)을 지원받은 경우, 사용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지원합니다.

\* (예시) 워라밸일자리장려금 6개월 기 지급 → 육아기 10시 출근제 6개월 추가 지급 가능

## 5. 출근 또는 퇴근시간 단축 모두 가능한지?

- 출근 1시간 또는 퇴근 1시간 등 하루 1시간 단축 모두 가능합니다.
  - 출근 30분, 퇴근 30분 합산하여 하루 1시간 단축도 가능합니다.

## 6. 지원 대상,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?

- (대상) 중소기업(우선지원대상기업) 및 중견기업
- (내용) 제도 사용 근로자 1인당 각각 월 30만원, 최대 1년
  - \*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(소정근로시간단축) +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 합산하여 최대 1년
- (규모) 직전년도 말일기준 근로자 수(고용보험 피보험자수)의 30%, 최대 30명 한도로 지급

## 7.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?

- “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(worklife.kr)” - 알림마당 - 공지사항 - 26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(육아기 10시 출근제)
-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- 뉴스·소식 - 공지사항 - 「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」